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2025년 수입식품 영업자 위생(보수)교육과정개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 1항에 의거 수입식품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수해야 합니다.

수강기간 : 2025년 3월4일 - 12월31일

교육과정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보관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수강생 혜택



01

수입식품 영업에 유용한 자료 제공

영업자에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 및 주의사항 등 최신의 자료와 법정위생교육 외 심화과정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원활한 유통과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2

위생교육 기출문제 제공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와 예상 문제를 제공합니다.
수강생은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시험 대비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03

간편한 교육과정 신청절차

최초 한번의 회원가입으로 매 년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에서 수료한 모든 이력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 참여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교육 관리 및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 방법



STEP 01

교육센터 접속

edu.khff.or.kr로
접속하여 로그인

STEP 02

수강신청

'수강신청'에서
수입식품위생교육 →
해당업종의 과목 선택

STEP 03

학습 및 평가

3시간, 60점 이상

STEP 04

수료

발급 → '수료증 발급'에서
출력 가능

※ 수강 시간은 총 3시간이며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 시험응시까지 완료 하셔야 수료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은 교육센터(1661-2371)로 연락 바랍니다.